| 1-24 | 「(가칭)기업실사의무화법」 제정 | 고용부·법무부·기후부 |
|---|---|---|

## □ 권고 내용

○ 국회의장·법무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환경부장관은 **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표**하도록 '(가칭)기업실사의무화법'을 제정하기 바랍니다.

## □ 이행 현황

○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동자 등 **국민의 알권리를 보장**하고, 기업의 **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**하기 위해,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을 통해 **'안전보건공시제'를 도입·시행** ('26.8.1~, '27.4.30. 최초 공시 예정)(고용노동부)

* ▲**(공시항목)** 안전보건관리체제, 산업재해 발생현황(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포함),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,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,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

▲**(공시주체)** <민간>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, 연간 공사금액 1,200억원 이상 건설사 등, <공공> 공공기관, 지방공사·공단

## □ 향후 계획

○ 안전보건공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('26.11월 시범 오픈, ~'27.1월 정식 오픈) 및 공시 가이드 마련·제도 홍보(연내)(고용노동부)

○ 법 제정 과정에 적극 협조(전부처)